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43

발의연월일: 2022. 3. 31.

발 의 자:윤영덕·이동주·박 정

홍성국 · 송갑석 · 신정훈

문진석 · 양향자 · 이용빈

위성곤 • 박홍근 • 민형배

조오섭 • 이병훈 • 이형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그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원판결보다 형량이 줄었다면 재심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되었던 구금에 대하여도 이를 국가가 보상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

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법률 제 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보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재심 절차가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면소 등의 경우) ① 다음	제26조(면소 등의 경우)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	
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	
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
	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
	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
	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u>경우</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